

의안번호	2204676
의 퇴 인	김윤덕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계번호	24C4330
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(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)	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·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(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과 같이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, 국가가 그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- 한국문학번역원은 비학위 과정으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, 대학원대학 운영과정에서 기존 강의장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설립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
 - 다만, 이수과정 개편 등에 따라 교직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인

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수과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교직원 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학원대학 설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

- 참고로 2024년 예산 기준 한국문학번역원의 “문학아카데미 운영”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]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아카데미 운영 예산(보조금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
교육과정 운영	1,323
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(해외 번역실습 워크숍, 수료생 및 전문번역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)	504
번역교육 기반 구축(전임교원 운영 ¹⁾ , 학술활동, 디지털교육 플랫폼 운영)	864
합계	2,691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2024년 기준 전임교원 4인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3억 6백만원임(1인당 평균 7,650만원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